

## 육계자조활동자금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5. 12.]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육계자조활동자금(이하 “육계자조금”이라 한다) 대의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육계자조금 대의원회는 육계자조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라 함은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를 말한다.
2. “육계자조활동자금 설치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공동준비위원회를 말한다.
3. “육계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4. “축산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단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용한다.

제5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대의원회에 관한 행정사항은 관리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제6조(의장의 임기 및 임무) ①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축산단체에서 협의하여 추천한다. 단,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의장은 대의원회를 주재하고, 의장이 궐석시 부의장이 의장 임무를 대행한다.

제7조(대의원의 임기 및 임무) ①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의해 다시 대의원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은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대의원회의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축산단체의 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관리위원회 의결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축산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9조(대의원회의 소집통지) 대의원회의 소집통지는 그 개회 10일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대의원회 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대의원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전일까지 통지한다.

제10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거출금의 납부여부 결정
2. 거출금액의 결정
3.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의 승인

제11조(소수대의원의 제안) ① 대의원은 대의원의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축산단체의 장에게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한 대의원은 축산단체의 장에 대하여 대의원회 개회 30일전에 서면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추가하여 제9조의 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안을 한 대의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긴급안건의 처리) 대의원회에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총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대의원회는 법제6조 또는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의원총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거출금 납부여부의 결정은 대의원총수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거출금액은 대의원총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최다득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④ 대의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10조3호에 해당하는 의결사항에 대해 같은 지역의 육계업자에게 그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사육확인서 포함)을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대의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② 대의원회에서 위촉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도별 축산업자 수 및 육계사육수수(또는 축산물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 위촉 위원의 궐위로 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관리위원회 감사의 위촉) ① 대의원회는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 중에서 관리위원회 감사 2인을 위촉한다.

② 감사는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궐위로 재 위촉된 감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의사록) ① 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4인 이상의 대의원이 기명 날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의사록은 대의원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축산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참여 및 외부인사 초청) ①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단체의 장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대의원의 실비변상)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의원회의 출석 등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는 육계자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육계자조활동자금 설치 공동준비위원회가 대의원회에 보고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조에 의한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해산한다. 